

인천광역시 규칙 (공포)

☐ 제 명 :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
일부개정규칙

☐ 개정사유

가. 의사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가. 의사담당관의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 함.(안 제5조)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장

송 영 직

2013년 10월 14일

인천광역시규칙 제2861호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의사담당관)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전·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사항
3. 정례회·임시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회기별 의사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5.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
6.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
8.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9.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10. 결산검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
11. 위원회 위원의 선임, 개선 및 보임에 관한 사항

12. 위원회 회의결과 취합 보고에 관한 사항
13. 회의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
14. 각종 의안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사항
15. 의결안건의 이송 및 보존에 관한 사항
16. 청원·진정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사항
17. 폐회 중 의원요구자료 접수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
18.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
19.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
20. 회의록 제작, 배부,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
21. 회의록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